



영국 United Kingdom

◦ 사회돌봄교섭위원회(Social Care Negotiating Body) 설립 계획

윤선우 |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 영국 정부는 2025년 9월 30일 사회돌봄(Adult Social Care) 부문 노동자를 위한 공정 임금 협약(Fair Pay Agreement, FPA) 도입 관련 협의안(consultation document)을 발행하였다. 해당 문서는 사회돌봄교섭위원회(Adult Social Care Negotiating Body)의 설립 방식과 역할, 교섭 절차,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10월 20일 영향평가서가 추가되면서 공정 임금 협약 추진과 관련한 검토 자료가 보완되었다.

✍ 공정 임금 협약(FPA)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개정안은 노동당이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노동당은 산업 부문 전체(sector-wide)에 적용되는 임금 및 노동조건의 최소 기준을 노사 교섭을 통해 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공정 임금 협약(FPA)을 사회돌봄 부문에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영국에서 사회돌봄교섭위원회 설립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노동법 개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024년 7월 총선으로 집권한 영국 노동당 정부는 1996년 고용권리법 제정 이후 약 30년 만에 대대적인 노동법 개혁을 추진하며, '근로 보상 계획(Plan to Make Work Pay)'을 이 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였다. 해당 개혁은 직장 내 권리를 현대 경제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그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고용권리법은 2025년 12월 국왕 재가를 받았으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노동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착취적인 호출근로(zero-hours contracts) 금지, 해고 후 불리한 재고용(fire and rehire) 금지, 취업 첫날부터 병가, 육아휴직, 부당 해고 보호 등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다.


✍ 호출근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무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호출하여 일을 배정하며, 이렇게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는 최소 근무 시간과 최저 임금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 중 하나이다. 해고 후 불리한 재고용의 경우 기업들이 노동자를 해고한 뒤 임금을 삭감하거나 노동 조건을 수정하여 다시 고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Employment Rights Act 202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5/36/enacted> (접속일자: 2026.5.6.)
- GOV-UK,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25.10.20.), "Closed consultation. Fair pay agreement process in adult social care – consultation document",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fair-pay-agreement-process-in-adult-social-care/fair-pay-agreement-process-in-adult-social-care-consultation-document#background> (접속일: 2026.5.6.)
- UK Government (2025.7.), "Implementing the Employment Rights Bill: Our roadmap for delivering chang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981e6e4e833d031a3158f87/implementing-the-employment-rights-bill-roadmap.pdf> (접속일: 2026.5.10.)

 해당 법안 제3부 부문별 임금과 노동조건(pay and conditions in particular sectors) 중 제2장 사회적 돌봄노동자(social care workers)에 관한 조항은 사회돌봄교섭위원회(Adult Social Care Negotiating Body)의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사회복지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and Social Care)은 정부, 노동조합, 고용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해당 교섭기구들은 돌봄노동자들의 최저 임금 및 기타 근로 조건에 대한 지침과 범위를 설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해당 교섭기구의 합의 내용은 하위 법령(secondary legislation)을 통해 비준되어 사회적 돌봄 부문 모든 노동자의 고용 계약에 법적으로 강제 적용되며, 이는 공정 임금 협약(FPA)을 사회적 돌봄 부문에서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영국 정부가 발표한 협의안(consultation document)에 따르면, 2023~2024년 기준 사회돌봄 부문 일자리의 약 21%가 호출근로(zero-hours contracts) 형태로 고용되었으며, 이는 경제 전반의 호출근로 형태 비중인 3.5%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사회돌봄 부문의 이직률은 약 25%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부문 일자리의 상당수가 국가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수준이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저임금 일자리라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성은 부문별 단체교섭(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돌봄교섭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해당 기구는 노동자 권한 강화, 해당 부문 내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돌봄인력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한 인정과 보상 보장, 생산성 향상 및 생활 수준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 정부는 2026년 가을까지 하위 법령 제정을 완료하여 해당 위원회를 정식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를 중심으로 첫 공정 임금 협약(FPA)의 예산 및 임금 기준 등을 협상하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2028년 4월 최종 비준을 거쳐 영국 전역의 돌봄 노동자 노동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이처럼 대대적인 법 개정과 유관 위원회 설립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내 사회돌봄 부문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과 인력 유지를 위해 국가적 경력 구조인 '돌봄 인력 경로(care workforce pathway)'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돌봄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이다. 사회적 돌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영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UK Government (2025), "Factsheet: Employment Rights Act 2025 – Evidence and Analysi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95e61e72a4a53b73d51382f/employment-rights-act-analysis.pdf> (접속일: 2026.5.11.)

- UK Parliament (2025.9.12.) "Employment Rights Bill 2024–2025: Lords stages and amendments",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10334/CBP-10334.pdf> (접속일: 2026.5.10.)

- 남선우(2025). 영국: 고용권리법안의 쟁점과 전망. 「국제노동브리프」11·12월호, pp.51~60, https://repository.kli.re.kr/bitstream/2021.oak/11924/2/%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_v.23_no.6_6.pdf



프랑스 France

◦ 지방선거에서 성별균형 명부제 확대 시행

곽서희 |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2025년, 프랑스는 지방의회 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기존에 인구 1,000명 이상 지자체에만 적용되던 성별균형 명부제를 1,000명 미만 지자체에도 전면 확대하는 법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개혁은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녀 후보가 교차로 배치된 명부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리고 해당 법은 2026년 3월에 실시된 지방선거부터 처음 적용되어 프랑스 전역의 소규모 코뮌(Communes) 의회 선거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프랑스는 1999년 헌법 개정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공직 및 직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00년 제정된 성별균형 명부제, 일명 ‘남녀동수법(La loi sur la parité)’은 정당이 명부식 선거에서 남녀 후보를 동수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인구 규모에 따라 투표 방식을 이원화하여 운영해 왔다. 인구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는 프랑스 전체 코뮌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체 인구의 13%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성별균형 명부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 결과, 1,000명 미만 지역의 여성 지방의원 비율은 37.6%에 머물렀으며, 명부제가 적용되는 1,000명 이상 지역의 48.5%와 비교해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성별 균형 명부식 투표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인구 1,000명 이상 지역에만 적용되던 투표 방식이 약 2만 5천 개에 달하는 1,000명 미만 소규모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과거 이러한 소규모 지역에서는 다인 선거구 방식의 다수대표제가 시행되어 성평등 확보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인구 1,000명 미만 지역에서는 2차 투표제(결선 투표제) 기반의 다수대표제와 더불어 유권자가 명부 내 일부 후보를 삭제하거나 타 명부 후보를 추가할 수 있는 교차투표 제도(panachage)가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은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를 표적 투표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6년 지방선거부터 확대 적용된 비례대표 명부식 투표제에서는 모든 후보 명부가 남녀 교차 배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후보 명부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유권자가 임의로 후보를 삭제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선호투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새 제도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부 완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인구 1,000명 미만 지역에서는 후보 명부가 법정 정원보다 최대 2명 부족하더라도 이를 완전한 명부로 인정하여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는 인적자원 확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구간별 최소 후보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구 100명 미만: 최소 5명 (법정 정원 7명 대비 2명 적은 수준)
- 인구 100~499명: 최소 9명 (법정 정원 11명 대비 2명 적은 수준)
- 인구 500~999명 (신설 구간): 최소 13명 (법정 정원 15명 대비 2명 적은 수준)

참고자료

- Ipsos (2026.3.12.), “Municipales 2026: quelle place pour les femmes en politique locale?,” <https://www.ipsos.com/fr-fr/municipales-2026-quelle-place-pour-les-femmes-en-politique-locale> (접속일: 2026.5.14.)
- La Nouvelle République du Centre-Ouest (2025.4.7.), “Municipales 2026 : le Parlement étend aux petites communes le scrutin de liste paritaire,” <https://www.lanouvellerepublique.fr/a-la-une/municipales-2026-le-parlement-etend-aux-petites-communes-le-scrutin-de-liste-paritaire-1744056716> (접속일: 2026.5.14.)
- Ministry of the Interior (2026.3.24.), “Élections municipales et communautaires 2026 : bilan chiffré du premier et du second tour,” <https://www.interieur.gouv.fr/actualites/communiqués-de-presse/elections-municipales-et-communautaires-2026-bilan-chiffre-du-premier-et-du-second-tour> (접속일: 2026.5.14.)
- Vie-Publique (2026.2.16.), “Lois pour la parité politique : un dispositif contraignant, des résultats contrastés,”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19618-parite-politique-hommes-femmes-quels-resultats> (접속일: 2026.5.14.)

 해당 법안 상정 당시 야당은 인구 밀도가 낮은 소규모 지역에서 성별 균형을 엄격하게 갖춘 명부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반대한 바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단일 후보 명부만 상정해 오히려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지방선거 1차 투표를 며칠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 Ipsos와 CESI 공과대학(CESI École d'ingénieurs)은 프랑스 국민들이 지방 정치 내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조사를 실시했다.¹⁾ 그 결과 인구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 성별균형 명부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대다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1%는 이 제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답했으며, 78%는 여성의 지방 정치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77%는 본 제도가 앞으로 여성의 시장직 진출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과 더불어 현실적인 우려도 있었다. 응답자의 70%는 해당 제도가 후보 명부 구성 자체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75%까지 높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성별균형 명부제가 지방선거 전반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소규모 지역에 별도의 후보 명부 인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해당 지역의 현실적인 후보 발굴 어려움을 완화하고, 선거 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반면 선거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론은 단일한 방향으로 수렴되기보다 제도 확대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Vie-Publique (2025.5.22.),
“Loi du 21 mai 2025 visant à harmoniser le mode de scrutin aux élections municipales afin de garantir la vitalité démocratique, la cohésion municipale et la parité,”
<https://www.vie-publique.fr/loi/283622-petites-communes-parite-scrutin-elections-municipales-loi-21-mai-2025>
(접속일자: 2026.5.14.)

1) 해당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응답자 개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조사 대상: 만 18세 이상의 프랑스 성인 인구를 대표하는 전국 표본 1,000명.
- 할당 추출법 적용: 응답자 성별, 연령, 사회적/직업 상태 유형, 거주지역 및 도시 규모 기준으로 할당. 자세한 내용은 조사보고서 원본 참조: Ipsos & CESI (2026), “Municipales 2026: Vers la parité?,”
<https://www.ipsos.com/sites/default/files/ct/news/documents/2026-03/municipales-2026-enquete-place-femmes-politique-locale-rapport-complet-web.pdf>



아일랜드 Ireland

여성 및 소녀를 위한 국가 전략 2025-2030 수립

이지원 |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2025년 11월, 아일랜드 아동·장애·평등부(Department of Children, Disability and Equality)는 「여성 및 소녀를 위한 국가 전략 2025~2030(National Strategy for Women and Girls 2025-2030)」을 발표하였다. 이번 전략은 앞으로 5년간 아일랜드 정부의 성평등 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으로, 성평등 증진과 보다 평등한 사회 구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 공공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전략은 2017~2021년 시행된 기존 국가 전략의 성과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이해관계자 및 시민 의견 수렴, 청년 참여 회의, 정부 부처 및 기관 간 협의, 특별 부처 간 위원회 운영 등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다.


이번 전략은 '성평등 사회에서 여성과 소녀가 번영할 수 있는 아일랜드(An Ireland where women and girls can thrive in a gender equal society)'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다음의 7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 존재의 반영(Being Counted): 정책 및 법률 수립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주류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모든 공공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 나답게 살아가기(Being Me): 유해한 성별 규범과 고정관념의 확산을 줄이고, 여성과 소녀가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리더십(Being a Leader): 여성의 동등한 리더십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정치·경제·스포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안전한 삶(Being Safe):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²⁾을 예방·근절하고, 공공장소와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 공정한 몫(Having a Fair Share): 노동시장 내 성별 불균형과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돌봄 부담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여 여성의 경제적·재정적 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 건강한 삶(Being Well):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여 여성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과 웰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원받기(Being Supported):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책임을 보다 평등하게 분담함으로써, 여성이 돌봄을 제공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 모두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 gov.ie (2025.11.18.), "National Strategy for Women and Girls 2025 - 2030", <https://www.gov.ie/en/department-of-children-disability-and-equality/campaigns/national-strategy-for-women-and-girls-2025-2030/> (접속일: 2026.5.20.)
- gov.ie (2025.11.18.), "Strategy Document and Formats", https://assets.gov.ie/static/documents/dfe2f9bb/The_National_Strategy_for_Women_and_Girls_2025_-_2030.pdf (접속일: 2026.5.20.)
- gov.ie (2025.11.18.), "Seven Strategic Objectives", <https://www.gov.ie/en/department-of-children-disability-and-equality/publications/seven-strategic-objectives/> (접속일: 2026.5.20.)


2) 아일랜드 정부에 따르면 범죄 경험 양상에는 성별 차이가 존재하며, 여성은 가정폭력, 성폭력, 공공장소 및 온라인 공간에서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략의 특징은 여성정책을 단순한 권익 증진 차원이 아니라, 성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적·사회문화적 요인에 대응하는 종합 전략으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여성 혐오, 왜곡된 남성성, 전통적 성 역할 규범 등을 주요 문제로 지목하고, 성평등 교육과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성평등을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와 인식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이번 전략은 여성의 경험과 필요가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하여, 각 정책 목표에 생애주기 접근법(life course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는 성평등 교육과 온라인 안전, 청년기에는 노동시장 진입과 리더십 확대, 중장년기에는 돌봄 부담과 경제적 안정, 노년기에는 건강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는 여성정책을 단기적 지원 중심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구조적 경험과 연결해 설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아울러 이번 전략은 국내 정책 중심의 전략이면서도 성평등 증진을 아일랜드의 핵심 외교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략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의제 등 국제규범과 연계하여 성평등을 기본적 인권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평등을 국내 사회정책 차원을 넘어 국제규범 이행과 대외 책임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 마지막으로, 이행 점검 체계를 이원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전략은 이행 점검 체계를 ‘활동 모니터링(Activity Monitoring)’과 ‘성평등 모니터링(Gender Equality Monitoring)’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활동 모니터링은 실행계획 과제의 추진 여부와 산출물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방식이며, 성평등 모니터링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평등 지표를 활용하여 실제 사회 변화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중 모니터링 체계는 단순히 정책 추진 실적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이 실제 성평등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평가하려는 장치라는 점에서 실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이번 아일랜드 국가 전략은 여성과 소녀의 삶을 둘러싼 불평등을 개별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성평등 주류화, 돌봄의 재분배, 폭력 예방, 노동시장 평등, 건강권 보장 등을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생애주기 접근과 이행·성과에 대한 이중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선언적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측정·평가하고자 했다는 점은 향후 아일랜드 성평등 정책의 실행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Australia

2026-2027년 여성예산 성명서를 통해 본 여성 정책 방향

조혜인 | 모나시대학교 Global Studies 조교수·서울대학교 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호주 연방정부는 5월 12일(화)에 「2026-2027 회계연도 여성 예산 성명서(Women's Budget Statement)」를 발표하였다. 해당 성명서는 여러 주요 핵심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가 11.5%로 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했으며, 도달했으며, 세계 성평등 순위가 2022년 43위에서 13위로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이후 현 정부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해 총 44억 달러(약 4조 원)를 투입해 왔다고 언급하였다. 본고에서는 해당 성명서를 바탕으로 호주 연방정부의 예산 배분 방향을 살펴보고, 호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정책 분야를 분석한다.

호주 연방정부는 ① 젠더 기반 폭력, ② 돌봄, ③ 여성의 경제적 평등과 안정, ④ 건강, ⑤ 리더십 및 대표성 등 다섯 가지 영역을 우선순위 분야로 제시하였다.

- 먼저, 젠더 기반 폭력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양육비 제도(Child Support Scheme)가 폭력과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원주민 여성과 아동이 비원주민 여성과 아동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젠더 기반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하는 현장 인력을 지원하고, 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재정·법률·주거 지원 등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무급 노동으로서의 양육과 돌봄이 여전히 여성에게 불균형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유급 육아휴직 제도 확대를 통해 돌봄의 공동 책임과 분담 문화를 확산하고,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여성 비중이 높은 돌봄 분야 종사자에게 공정한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시하였다.


- 여성의 경제적 평등과 안정 영역에서는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관련 제도 개혁을 통해 성평등 조치를 강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은퇴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연금(superannuation)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 영역에서는 여성 건강 패키지를 기반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여성 대상 1차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더 많은 벌크 빌링(bulk billing) 클리닉*과 공립 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문화 사회인 호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적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과 웰빙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호주의 공공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진료 방식 중 하나로, 환자가 진료비를 직접 내지 않고 의료기관이 메디케어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따라서, 환자 본인 부담금이 없어, 결과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료 진료에 해당됨.


참고자료

• Australian Government.(2026). Women's Budget Statement 2026-2027, <https://budget.gov.au/content/womens-statement/index.htm> (접속일:2026.5.13.)

 리더십 및 대표성 영역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여성 리더십과 성별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기존 여성 예산 성명서와 비교할 때, 개별 정책 영역에 대한 자원 배분을 넘어 젠더 관점을 정책 설계와 규제 구조 전반에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기존 성명서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젠더 기반 폭력 대응, 돌봄 지원 등 분야별 정책 방향과 예산 배분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 성명서는 제도적 허점과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젠더 기반 폭력 영역에서는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제도적 남용과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었다. 예컨대 양육비 제도 개혁과 집행 강화는 가족제도가 복지제도가 폭력과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경제적 평등 영역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저·중소득 근로자 대상 세제 혜택과 고용 규제 개편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조정하려는 흐름이 나타난다. 돌봄과 건강 영역 역시 유급 육아휴직 확대, 연금 개혁, 벌크 빌링 클리닉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종합하면, 이번 성명서는 호주의 여성 관련 예산 체계가 점진적 정책 확대 단계를 넘어, 젠더 관점의 제도적 내재화와 구조적 개편을 지향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정책이 특정 분야의 지원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노동시장·돌봄·보건·대표성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영역에서 여전히 예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향후 정책 이행 과정에서 재정 투입의 지속성과 실질적 효과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